

『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당초 : 「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」
 - 변경 : 「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」
-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2조, 제9조)
 - 인용 법령 명칭 변경
 -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 명시
 -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함

○ 위원회 부위원장 변경(안 제2조)

· 당초 : 부시장 → 변경 : 지명업무 담당국장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, 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참여 명시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